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(4공구)]

- 점검일시 : 2017.12.14 (목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, 박수엽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현장에 출입하는 자재 운반기사나 장비 조종원은 현장에 진입하여 외부에서 활동시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작업할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바람.(NO.1)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금화지하차도 굴착구간 B라인 복공 상단에 안전간이 미설치되어 있고, 주형보로 이동할 안전한 가설통로가 미설치되어 추락과 전도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태이므로 조치요망(N0.2)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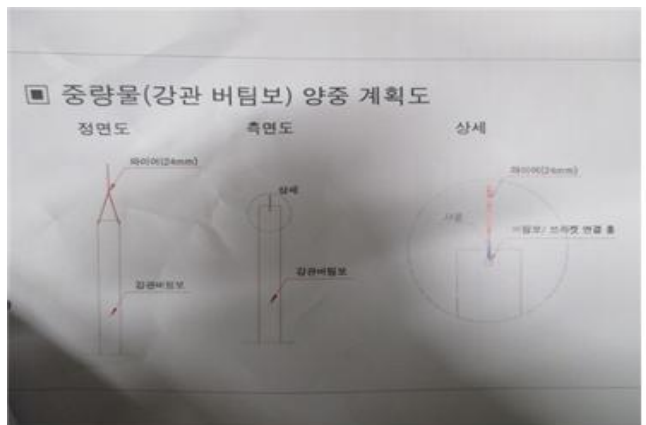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금화지하차도 굴착구간 B라인 복공 상단에 야적된 복공판이 전도위험이 높은 상태로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낙하 위험이 없는 위치까지 이동적치하고 단부에 중량물을 적치하지 않도록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요망(N0.3)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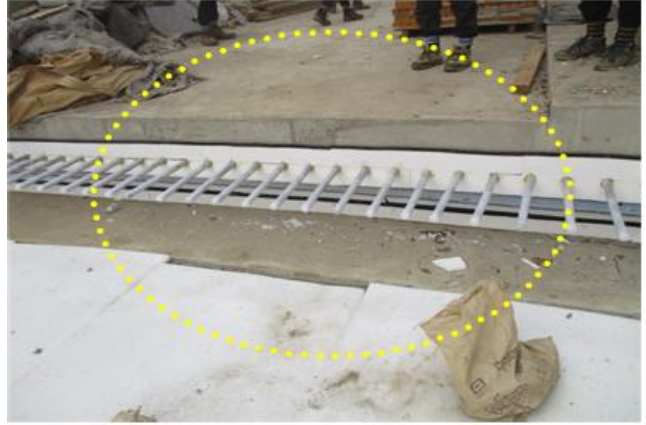
- 금화지하차도 흙막이 공사에 사용하는 강관버팀보 인양시 작업계획서상 버팀보 브라켓 연결 홈을 이용하여 2줄걸이로 작업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1줄을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고 있어 낙하의 위험이 있으니 근로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등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금하지하차도 기초연결부 작업구간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통로를 설치 후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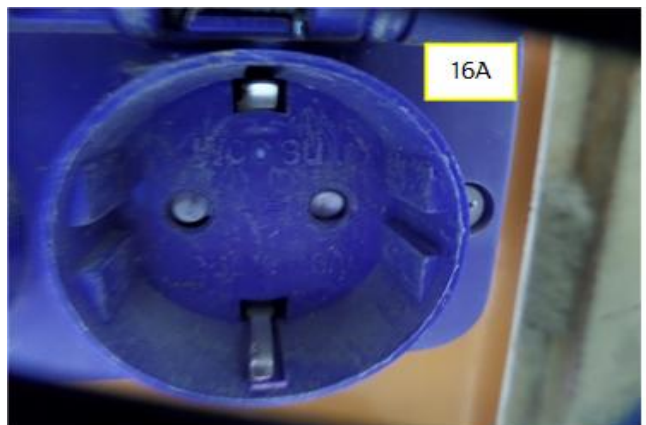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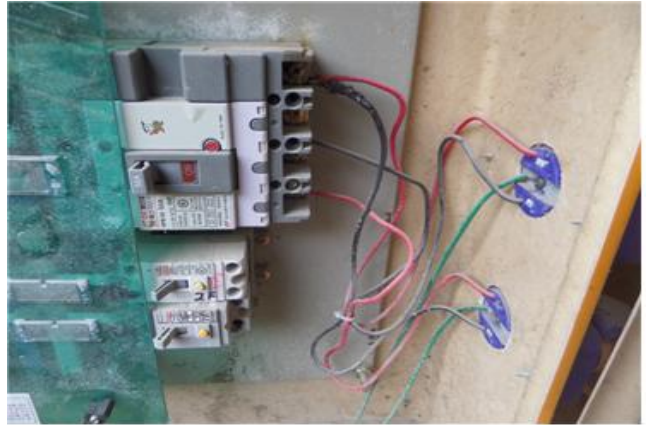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금화지하차도 굴착구간 종점부 배선용차단기에서 콘센트(16A)에 바로 연결되어 미세전류 누전을 차단하는 누전차단기가 미경유되어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태이므로 누전차단기를 경유하도록 조치요망(N0.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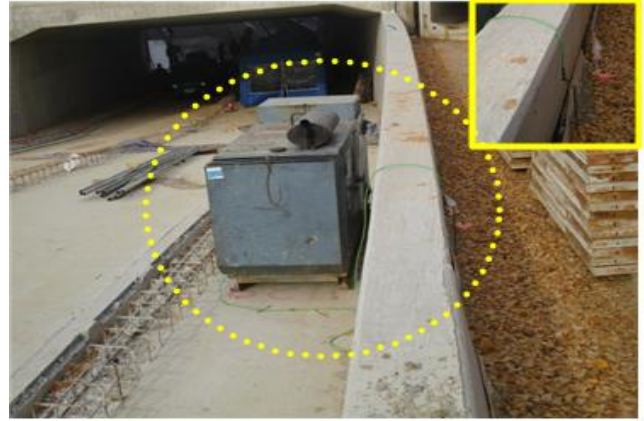
- 또한 16A 콘센트를 50A 배선용차단기에 연결하여 사용중으로 16A~50A 사이 용량의 전기 기계기구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콘센트 과부하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태이므로 적정용량으로 설치요망(N0.5)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(전기 기계/기구의 적정설치 등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박미지하차도 구간에 사용하는 이동식발전기 외함접지는 접지봉이 75cm 이상 매설될 수 있도록 관리바람.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8(기계,기구접지), 공통-19(이동식 발전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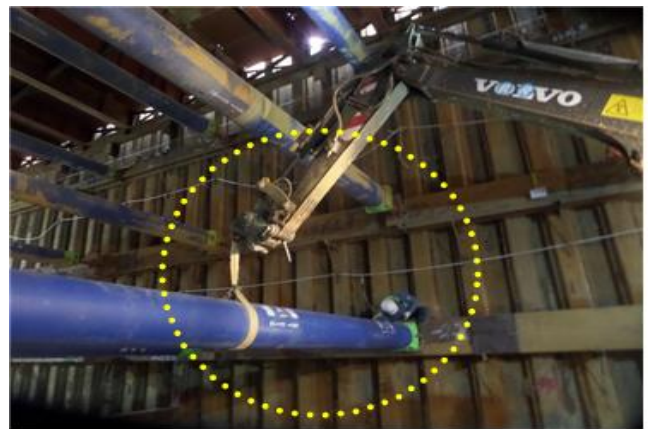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토목부)

- 금화지하차도 굴착구간 종점부에 벽체에서 토공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경계부가 미폐합 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띠장이 부족한 부분은 연장하고 흙메우기가 안된 부분은 흙메우기 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금화지하차도 굴착구간 버팀보 설치작업중으로 굴삭기를 버팀보 인양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크레인 진입이 어려운 공사여건상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장비작업계획서에 적정용량을 계산하여 명기하고 장비작업자가 용량 이상을 인양하지 않도록 교육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(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폐기물처리 상차작업시 덤프가 2대가 정차하고 굴삭기 1대가 운영되어 장비 상호간 충돌이나 운전자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도자를 배치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(접촉 방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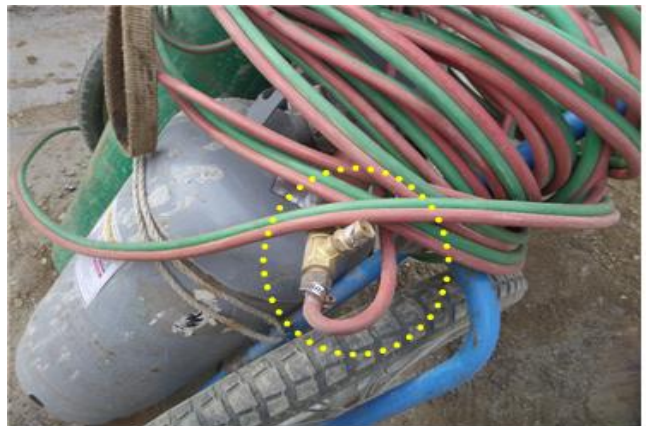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금화지하차도 터파기 현장에 위험물은 필요한 양을 제외한 수량을 위험물보관소로 이동/적치 하도록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(위험물 등의 보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금화지하차도 터파기 현장에 미사용중인 가스 용접기의 역화방지기가 파손되어 있으므로 교체 하고, 미사용할 경우 분리하여 위험물보관소로 이동 적치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(안전기의 설치)



○ 전도재해 예방(토목부)

- 금화지하차도 굴착구간 종점부 경사면은 표면이 동결되어 있고 안전한 가설통로가 미확보되어 통행시 전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설통로로 사용할 경우 정비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

○ 전도재해 예방(토목부)

- 금화지하차도 굴착구간 종점부 경사면에 등근 자재를 야적하여 굴러 떨어지거나 작업자가 밟을 경우 전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동적치하고 등근자재나 미끄러질 수 있는 자재를 경사면에 야적하지 않도록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요방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386조(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)

